세무회계 푸른

우(08216)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7, 4층 407호(구로동, 삼영빌딩)

☎ : (02)2069-0227 FAX : 0507-478-1156 e-mail : puruntax@naver.com

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

연말정산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누락되는 소득세액공제내역이 없도록 아래 안내 서류 구비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**1 월 31 일(금)전까지** 발송 부탁드립니다.

◈ 근로자 기본서류

- 부양가족이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**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**) 제출
- 2019 년 중도입사자분들 중 입사일자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필히 전 직장 **원천징수영수증**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해드린 **소득세액공제 신고서**는 **작성하여 서명이나 날인**후 자료 송부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직접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**최소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부양가족은 필히 체크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◈ **소득·세액 공제 관련 서류(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) : 가능한 1)의 방법으로 pdf 파일로 전달 요망**

1)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: 소득공제자료를 pdf파일로 다운 받은 후 파일 자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(파일명 : 회사명_성명 ex) 삼성전자_홍길동)

주의사항) 귀속연도 2019년도 선택 후 우측의 근로제공월만 check 후 다운로드 받아야함.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월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가능(기부금은 비근로기간도 공제 가능)하므로 비근로기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공제 받은 후 사후에 추징당하는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대응 및 소명해야함.

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(2020년 1월 15일 이후부터 제공 예정)
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(www.hometax.go.kr) 에 접속하여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"조회/발급" ➔ "연말정산" ➔ "연말정산간소화" ➔ "소득·세액공제조회/발급"에서 보험료, 의료비 교육비,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, 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, 주택자금, 주택마련저축, 기부금등의 확인서 출력.

2) 직접 준비하는 방법

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를 각 신용카드 사에 요청하여 발급
②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
③ 기부금(교회등) 이 있을 경우 기부한 기관에 의뢰하여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
④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126으로 전화하여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(본인만 가능,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로그인 필요함)
⑤ 교육비는 교육비를 납입한 기관에 의뢰하여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
(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방과후 수업료, 교복구입비, 급식비, 도서구입비도 공제대상)